의 안 번 호	제320호
의결 년월일	1995. 12. 28. (제 40 회)

의결사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년월일	1995. 12. 18.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320

제출년월일 : 1995. 12. 28.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의거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료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의 적용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융자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함.(안 제4조)

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조건)을 정함(안 제6조)

라. 융자신청, 대상자 결정, 대상자 통지, 융자금 신청 및 대출등 융자절차를 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나. 통상산업부 수발57350-993('95. 11. 10)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준칙)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의 설치 및 운용에 힐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고성군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지원법 제10조3항 및 동법시행령 21조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융자금 운영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①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기업유치지원사업

1.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2. 군수가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①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②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구 분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1인당 500만원 이내	연 3%	5 년 이 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이내	연 3%	5 년 이 내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제7조(융자절차) ①융자신청 :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 1,2,4,5호 서식)

②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경우 군수는 삼천포화력본부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 할 수 있다.

③대상자 통지 :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6호 서식)

④융자금 신청 및 대출

1.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2.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 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시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사후관리) ①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8호 서식)은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 점 (100)	배 점 내 역			비 고
		상	중	하	
지역내 장기거주	20	(10년 이상) 20	(9~5년) 15	(4년 이하) 10	
사업성공을 및 사업추진 의욕	20	20	15	10	
사업참여 인원	30	(3인이상) 30	(2 인) 20	(1 인) 10	. 20세 이상 . 학생·직장인 제외
자기자본 투자율	30	(50%이상) 30	(30%이상) 20	(30%미만) 10	. 신규 투자비 기준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 점 (100)	배 점 내 역			비 고
		상	중	하	
대 상 사 업	30	(지역특산물 가공) 30	(농수산물 생산) 20	(기 타) 10	
고 용 인 원 수	25	(20인 이상) 25	(10인 이상) 15	(10인 미만) 10	
자기자본 투자율	20	(70%이상) 30	(50%이상) 20	(50%미만) 10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 의욕	25	25	20	15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금액(천원)			용 도	
사업수입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	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주 민 복 지 지 원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개 요 :

3. 사 업 장 소 :

4. 사업비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융 자 (지원사업기금)	자 부 담	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3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자금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별지 4 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금액 (천원)				
사업 수입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개 요 :

3. 사 업 장 소 :

4. 사업비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융 자 (지원사업기금)	자 부 담	합 계
금 액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6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 ...

발급번호 제 호

기 업 유 치 지 원 사 업 자 금 융 자 대 상 자 결 정 통 지 서

성 명	주 소	금 액 (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 (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융자내용	융자금액	금 원			융 자 일			
	융자기간	년거치 년상환			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 기재)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 : ①, 현장유지 : ②, 운영부실 : ③, 중도폐지 :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난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기 관 명
(융자기관명)

199 . . .

분류기호 :

수 신 : 고 성 군 수

제 목 : / 분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실적

1. 실적 및 누계

< 금액단위 : 천원 >

구 분	전분기말 융자잔액 / 이월사용액 (A)	년 (/4분기) 배 정 액 (B)	융 자 한 도 액 (A + B)	융 자 실 적		지자체 반납액	미융자 잔 액
				건 수	금 액		
당분기							
누 계							

2. 융자실적 내용

< 금액단위 : 천원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금액	융자조건	융자일자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제23조에 의거 계상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고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는 융자기관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대여하고, "을"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갑"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융자"라 함은 "을"이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사용하는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융자기관"이라 함은 융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대여금액)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금액은 발전소주변지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상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지급일자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3조(대여금의 사용) 을은 갑으로 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대여형식) 갑이 을에 대여하는 형식은 증서대출 및 신용대출로 한다.

제5조(대여절차) ①"갑"은 대여금액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을"에게 통지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여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차용금 원금 상환계획서 및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조건) 이 자금의 대여금리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발전소 지역별로 아래의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금리에서 "을"의 취급수수료율을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 실수요자 융자금리 연 3%

○ "을"의 취급수수료 : (지자체별로 연 2%이내에서 약정 체결)

제7조(원리금 상환) ①"을"은 대여시의 상환약정에 따라 할부원금을 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관이 융자 종결 기일까지 미융자된 대여금은 융자종결 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자로부터 1월 이내에 실수요자로 부터 상환기한 도래전에 회수한 융자금은 매월말 기준 익월말일까지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미융자된 대여금의 상환원금은 최종 대여분부터, 기한전에 회수되는 상환원금은 최초 대여분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다.

③대여금의 할부 상환금액 계산상 발생하는 100만원 미만 단수금액은 제1회 할부원금에 이를 가산한다.

④"을"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잔액에 제6조 제1항에 의한 대여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 1회 대여 응당일에 "갑"에 납입한다.

다만, 제1항단서에 규정에 의한 미융자된 대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 상환원금에 대해 "을"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⑤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원 절사한다.

⑥"을"이 제1항 및 제4항이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또는 이자액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하는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기관 일반자금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을"은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납입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①대여금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고 대여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여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②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하고 기한내 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취급 기준) ①융자기관의 장은 융자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갑이 제시한 융자금 취급 조례에 의거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을"은 실수요자에게 융자하고자 할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 취급점포) ①융자업무는 "갑"이 소재하는 지역의 "을"의 점포에서 취급한다.

②상환금 및 이자 수불은 당초 융자금을 지급한 "을"의 점포에 한한다.

제12조(약정의 수정 또는 해석)

①이 약정은 "갑"과 "을"이 합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약정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채권관리) ①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는 "을"의 채권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기 융자를 받은자에 대해 "갑"으로부터 융자금 회수 요구가 있을때, "을"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지체없이 취한다.

③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하되 특수 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때에는 "을"의 요청에 의거 "갑"이 검토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이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을"은 대여금 융자신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관계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의 종료) 이 약정의 효력은 "을"의 "갑"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갑"이 인정함으로써 종료된다.

제16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

이 약정은 1995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고 성 군 수 (인)

을 : 금융기관의 장 (인)